



# 보 건 복 지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('24.5.1.)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

## 1. 관련근거

- 가. 기초의료보장과-6756(2021.12.15.), "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"
- 나. 기초의료보장과-872(2023.2.10.), "코로나19 진단검사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 (변경) 안내"
- 다.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-1170(2024.4.25.), "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(경계→관심)안내"
- 라.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-1972(2024.4.25.), "(의료기관)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"
- 마. 보험급여과-1818(2024.4.29.), "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(5.1.)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"

2. 위와 관련,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·변경에 따라 '의료급여 입원·격리·특수병상 등' 및 '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'도 **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종료·변경될** 예정이며, **의료급여에서 별도로 운영중인** 수기도 다음과 같이 **종료될** 예정입니다.

- 다 음 -

수가코드	수가명	적용기간
AH041~AH044	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	'24.5.1. 0시부터 종료

3. 아울러,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에 따라 **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**도 다음과 같이 **'24.5.1.부터 종료될**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각 기관에서는 동 사항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**유관기관 등에 안내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구분	진단검사비 지원 ~ '24.4.30.까지	진단검사비 지원 종료 '24.5.1.이후 ~
진료내역	명세서 분리작성 (코로나19 국비지원)	명세서 통합작성 (코로나19 국비지원 종료)
진단검사비 명세서	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"3/02" 기재	미기재

진단검사* 외 진료내역 명세서(1종 외래)	명세서 특정내역 MT018에 "M099" 기재	미기재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\*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(참고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안내」). 끝.

## 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대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지사, 강원특별자치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북특별자치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

민간전문가 **고은미**      행정사무관 **이광성**      기초의료보전결 2024. 4. 30.  
장과장 **김승일**

협조자

시행 기초의료보장과-2535 (2024. 4. 30.)      접수 감염병관리과-10250 (2024. 4. 30.)  
우 30113    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/ http://www.mohw.go.kr  
(어진동)

전화 044-202-3098 /전송 044-202-3951 / em0914@korea.kr / 대국민 공개